

제 호

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명 칭: 중앙모자의료센터
5. 센 터 장:

위 기관을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